

서울특별시주요시설경비원근무지침폐지

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8년 1월 31일

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강 덕



주요시설경비원근무지침폐지지침안

1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제정된지 27년이 지났고 사실상 사문화될 통 지침을 폐지함.

※ 주요시설 경비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경계근무수칙(1982. 5.30. 비상913-269) 및 특별경계강화근무지침(1983.11. 2. 비상913-180)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규정 : 경계근무수칙(1982. 5.30. 비상913-269)

특별경계강화근무지침(1983.11. 2. 비상913-180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서울특별시예규 제 호

주요시설경비원근무지침폐지지침안

주요시설경비원근무지침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(02)731-6211, 6611(FAX)731-6219
 처리부서 : 총무과(시청본관 4층) 담당(정태섭)

문서번호 총무12141-48

시행일자 1998. 1. (2)

경유

수신 법무담당관

참조

선결	법무담당관 3		지시	
접수	일자		결재	법제계장 <i>정태섭</i>
	시간			법제심사계장 <i>a</i>
번호	11P		공람	
	처리과			
담당자				

제목 주요시설경비원근무지침폐지 (제4)

주요시설경비원근무지침폐지지침안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주요시설경비원근무지침폐지지침안 5부. 끝.

총무과장 *이영주*

서울특별시

우 100-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211, 6212 / 전송 (02) 731-6219
 처리부서 : 총무과(본관4층) 담당 (장 태 섭)

문서번호 총무12141-
 시행일자 1998. 1. . (년)
 (제 1안)
 수신 내부결재
 참조

취급		시 장	
보존		시	
부시장	전결	법무담당관 심사	
내무국장	기	법조	
총무과장	기		
서무1계장	기		
기안	정태섭		

11.8

제목 주요시설경비원근무지침폐지

제정된지 27년이 지났고 이와 유사한 경계근무지침(1982. 5.30. 비상 913-269) 및 특별경계강화지침(1983.11. 2. 비상913-180)이 별도 정해져 있는 등 사실상 사문화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동지침을 폐지하고자 합니다.

첨부 : 주요시설경비원근무지침폐지지침안. 끝.

(제 2안)

수신 : 법무담당관

제목 : 주요시설경비원근무지침폐지에 따른 조치의뢰

주요시설경비원근무지침폐지지침안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주요시설경비원근무지침폐지지침안 5부. 끝.

총 무 과 장

주요시설경비원근무지침폐지지침안

제정일자	1998. 7. 8	제정처	경비원
담당자	김기현	부서	경비원부

1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제정된지 27년이 지났고 사실상 사문화된 등 지침을 폐지함.

※ 주요시설 경비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경계근무수칙(1982. 5.30. 비상913-269) 및 특별경계강화근무지침(1983.11. 2. 비상913-180)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음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규정 : 경계근무수칙(1982. 5.30. 비상913-269)

특별경계강화근무지침(1983.11. 2. 비상913-180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서울특별시예규 제 호

주요시설경비원근무지침폐지지침안

주요시설경비원근무지침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새규칙